비밀 유지 계약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416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삼성 전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청함)와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IPS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2003년 9월2일 (이하 "계약발효일"이라 칭함)부로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칭함)를 체결한다.

- 배 경 -

"갑"과 "을"은 반도체 총괄에서 추진하는 LCD 7세대 설비 국산화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 평가 및 개발에 필요한 설계, 소자 구조, 발명, 제품, 제조, 공정, Glass, 재료, 소프트 웨어, 서비스, 도면, CAD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영업 데이터, 사업계획, 종업원, 거래선, 재정 등과 관련된 정보, 기술자료, Know-how(이하 "비밀 정보"라 칭함)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다.

- 내 용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 1 조. 비밀 정보의 소유권

"갑"과 "을"은 각각 소유한 비밀 정보가 이 정보를 제공한 측의 유일하고도 독점적인 소유권리 하에 있음을 동의하고 인정한다.

제 2 조. 사용 제한

"갑"과 "을"은 제공된 모든 비밀 정보가 상기 배경에 명시된 목적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제공한 측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각 회사 자체에서 요구되는 비밀 정보 수준으로 비중을 두어 다루어지고 보호 되도록 하는데 동의한다.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조사, 실험, 개발,상업 혹은 다른 사업에 이 비밀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제 3 조.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비밀 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

- 가. 주지의 사실로 발표된 정보인 경우
- 나. 본 계약 하에서 정보를 공개한 후 정보 제공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출판에 의하거나 혹은 정보를 수령한 측의 잘못없이 주지의 사실로 된 경우
- 다. 정보를 수령한 측이 정보를 받을 당시에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며 정보를 제공한



측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비밀유지 의무 하에 획득한 정보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라. 제3자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없이 독립적으로 공개되고 또한 제 3자는 비밀유지 의무 하에서 정보를 제공한 측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제 4 조. 종업원 준수 규정

- 가. "갑"과 "을"은 제품의 평가 및 개발과 관련되어 자료를 열람해야 하는 "갑"과 "을"각 사의 종업원에게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비밀 정보를 열람하는 종업원들에게는 본 계약서에 주어진 제한 규정을 인지시키도록 합의한다. 이 외 자회사를 포함한 다른 종업원들에게는 상대방으로부터 입수한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나. 단, 본 계약의 목적상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하며, 본 계약에 준하는 제3자와의 비밀유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비밀 공개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갑) 또는 (을)은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기간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이나 본 계약 하에 제공된 비밀 정보를 계약발효일로부터 3년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며, 어떠한 비밀 정보도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

제 6 조. 실시권 제한

본 계약서에 따라 상대방에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에 대한 임의의 권리나 지적 재산권을 상대방에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 7 조. 계약기간 및 종료 조건

- 가. 본 계약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나. "갑"과 "을" 양자는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이 본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때 위반 측은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배상해야 하며 상대방은 위반 측에 대하여 모든 법률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Till

제 8 조. 자료 반환

제 7조에 따라 본 계약 종료되거나 "갑"과 "을"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모든 비밀 정보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며 파기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파 기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 9 조. 준거법

본 계약서의 조항들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해석,적용된다.

제 10 조. 독립성

본 계약서의 조항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어떠한 특정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 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제 11 조. 수정

본 계약서의 조항들은 상호 서면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양 사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사 공인된 대표의 상호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삼성전자주식회사

성명: 이 윤 유

직위: 대표이사

IPS 주식회사

성명: 장호 🕏

직위: 대표이